

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(강득구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6969
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20. 12. 28.

발 의 자 : 강득구 · 소병훈 · 양정숙
김승원 · 남인순 · 윤재갑
윤미향 · 맹성규 · 이원욱
이수진(비) · 주철현 · 송갑석
의원(12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 허가를 할 때 유효기간을 두지 않고 있으나, 과거 대기오염물질이 배출허용 기준 이하로 배출되었더라도 시설 노후화 등으로 인해 허가 시점보다 대기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거나 기존에는 배출하지 않았던 새로운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. 또한, 인근 주민들은 대기오염물질 노출로 인한 각종 질환에 대한 우려와 불안감이 높으며, 해당 지역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관련 내용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.

이에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유효기간을 5년으로 정하고 유효기간 만료 전 허가를 갱신하도록 하여 노후화된 배출시설을 철저하게 관리 감독하고, 배출시설 인근 주민들이 배출시설 허가에 대한 내용을 인지할 수 있도록 시·도지사 및 지방 환경관서의 장은 조사 결과를 적정한 방법으로 주민들에게 알려 주민의 건강과 안전을 증진하려는 것임.

또한 유치원, 초등학교, 어린이집 등 영유아·어린이 등이 이용하는 시설에 인접한 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보다 강화된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(안 제16조제1항, 제17조제2항 및 제23조의2 신설).

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대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6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「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」”을 “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주거지역 중 인구밀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, 「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」”으로 한다.

이 경우 「영유아보육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, 「유아교육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,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인접한 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강화된 배출허용기준을 정할 수 있다.

제17조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이 경우 시·도지사 및 지방 환경관서의 장은 조사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, 전광판 등 그 밖에 적절한 방법으로 일반인에게 알려야 한다.

제2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3조의2(배출시설 설치허가 등의 유효기간) ① 제23조제1항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허가 및 설치신고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.

② 환경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는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거나 설치신고를 한 자가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할 수 있다. 이 경우 매 회의 연장기간은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③ 제2항에 따른 유효기간의 연장신청 절차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배출시설 설치허가·신고의 유효기간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거나 설치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을 이 법 시행일부터 5년으로 본다.

법」 제12조제3항에 따른 지역 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거나 「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대기관리권역(이하 “대기관리권역”이라 한다)의 대기질에 대한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시·도 또는 대도시의 조례로 제1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보다 강화된 배출허용기준(기준 항목의 추가 및 기준의 적용 시기를 포함한다)을 정할 수 있다.

④ ~ ⑥ (생략)

제17조(대기오염물질의 배출원 및 배출량 조사) ① (생략)

② 시·도지사 및 지방 환경관서의 장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구역의 배출시설 등 대기오염물질의 배

 -----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6조제1항 제1호가목에 따른 주거지역 중 인구밀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, 「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」 -----

④ ~ ⑥ (현행과 같음)

제17조(대기오염물질의 배출원 및 배출량 조사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

출원 및 배출량을 조사하여야
한다. <후단 신설>

③ ~ ⑤ (생략)
<신설>

이 경우 시·도지사 및 지방 환경관서의 장은 조사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, 전광판 등 그 밖에 적절한 방법으로 일반인에게 알려야 한다.

③ ~ ⑤ (현행과 같음)

제23조의2(배출시설 설치허가 등의 유효기간) ① 제23조제1항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허가 및 설치신고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.

② 환경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는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거나 설치신고를 한 자가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할 수 있다. 이 경우 매 회의 연장기간은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③ 제2항에 따른 유효기간의 연장신청 절차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.